

<영동군 공고 제2024-1247호>

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
우리군 관내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,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 명령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, 이사감 등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공고명칭 :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4년 9월 24일 ~ 2024년 10월 11(17일간)
3. 공고대상 : 불임 참조(4건)
4. 공고내용

차량 소유주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(폐차 및 회수)하여 주시기 바라며, 차량을 무단방치한 행위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1조8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명령에 응한 경우에는 범칙금 20~30만원이 부과되며,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(강제처리)의 규정에 의거 폐차 후 범칙금 100~150만원이 부과되며, 이를 납부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처벌(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)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2024년 9월 24일

영 동 군



※문의처 : 영동군 건설교통과 교통팀 ☎043-740-3512